**[별첨] 3**

**임원유족보상금 지급규정**

**제 1조 【 목적 】** 이 규정은 당사 정관 제 39조 3항 규정에 따라 임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회사는 임원의 퇴직금 외 별도의 임원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.

**제 2 조 【 임원의 정의 】**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이라 함은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.

② 퇴직금이 없는 조건의 임원계약을 한 임원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이 아니다.

**제 3 조 【 지급사유 】** 임원유족보상금은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시 임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.

**제 4 조 【 유족보상금 산정 및 지급기준 】** ① 유족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1년간 지급된 보수 총액 (급여 및 상여금)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.

[1안]

|  |  |
| --- | --- |
| 구분 | 지급기준 |
| 업무상 재해나 질병사망 | **『근로기준법』에 따른 평균임금의 1,000일분** |

**제 5 조 【 유족보상금 지급방법 】** ① 임원유족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유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 현금 외의 회사의 자산 (재고자산, 고정자산, 금융자산, 유가증권, 보험증권 등)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**제 6 조 【 유족보상금의 지급시기 】** 임원유족보상금은 지급사유 발생시 3개월 이내에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**제 7 조 【 장의비 】** 임원유족보상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평균임금 10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부 칙**

**제1조 【 시행일 】**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 [경과규정]**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

**제3조 [적용시기]** 이 규정은 본 규정 시행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.